

장애등급에 따른 가산지급액(제104조 관련)

장애등급	가산지급액
1급 ~ 4급	월봉급액의 4배
5급 ~ 8급	월봉급액의 3배
9급 ~ 12급	월봉급액의 2배
13급 ~ 14급	월봉급액의 1배

비고 : 장애등급은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제45조 및 별표 3·별표 4에 따른다.